

학교시설건축 · 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

※ 제2면 및 제3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과 □안은 표기하지 않습니다.
 (3쪽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승인번호
			□□-□-□□□

건축주	①성명	생년월일
	(서명 또는 인)	
	주소	(전화번호)

설계자	②성명	면허번호
	(서명 또는 인)	
	사무소명	등록번호
	주소	(전화번호)

대지조건	위치	□□-□□□-□□-□□
	지역	지구
	지목	면적
		m²

용도	③주용도	④부속용도

규모	⑤건축면적	⑥연면적	지하면적
	m²	m²	m²
	⑦건폐율	⑧용적율	건축물최고높이
	%	%	m
	층수(지상, 지하)		

⑨구조	공사종류				
	□				
착공예정일	준공검사에정일				
오수정화시설	주차장	옥내	자주식 기계식	대	m²
건축물의형태		옥외	자주식 기계식	대	m²

⑩기술사의 확인 대상인 경우	구조기술사 성명	(서명 또는 인)	(전화)
	설비기술사 성명	(서명 또는 인)	(전화)

일괄처리내용	「국토이용관리법」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	[]
	「도시계획법」에 의한 행위의 허가,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	[]
	「자연공원법」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,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국가사업의 협의	[]

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의2에 따라 학교시설 건축·축조의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 제출서류	1.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 1부 2.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 3. 「건축법 시행규칙」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 각 1부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토지(임야)대장 2. 토지등기부등본	없 음

승 인 서

승인 제 호

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학교시설의 건축·축조는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의2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의 건축·축조를 승인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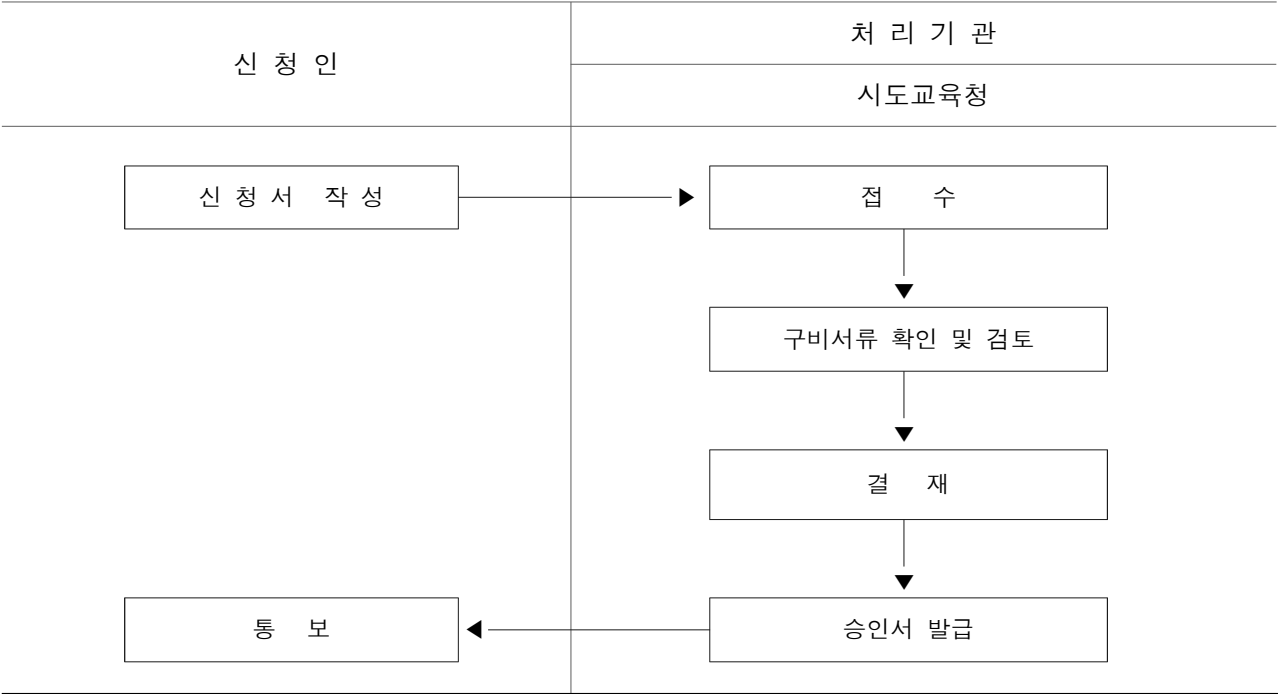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(교육감 · 교육장) (서명 또는 인)

건축승인 신청안내			
제출하는 곳		처리부서	
수수료	없 음	처리기간	
근거법령	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		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신청 학교시설의 동별개요

(							
---	--	--	--	--	--	--	--

유의사항

- ※ 작성방법(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십시오)
- ①·②·⑩란 및 신청인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, 도장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.
 - ③ 및 ④의 "용도"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, "부속용도"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50%미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.
가. 건축물의 설비·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
나. 사무·작업·집회·물품저장·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
다. 구내식당·구내탁아소·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
라.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
 - ⑤"건축면적"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, 지상 1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·차양·부연등이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.
 - ⑥"연면적"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이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.
 - ⑦"건폐율"은 건축면적÷대지면적×100(%)로 산정합니다.
 - ⑧"용적율"은 연면적(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은 제외)÷대지면적×100(%)로 산정합니다.
 - ⑨"구조"는 목조·조적조·철근콘크리트조·철골조·철골철근콘크리트조 기타로 기재하되, 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

